

환경표지 인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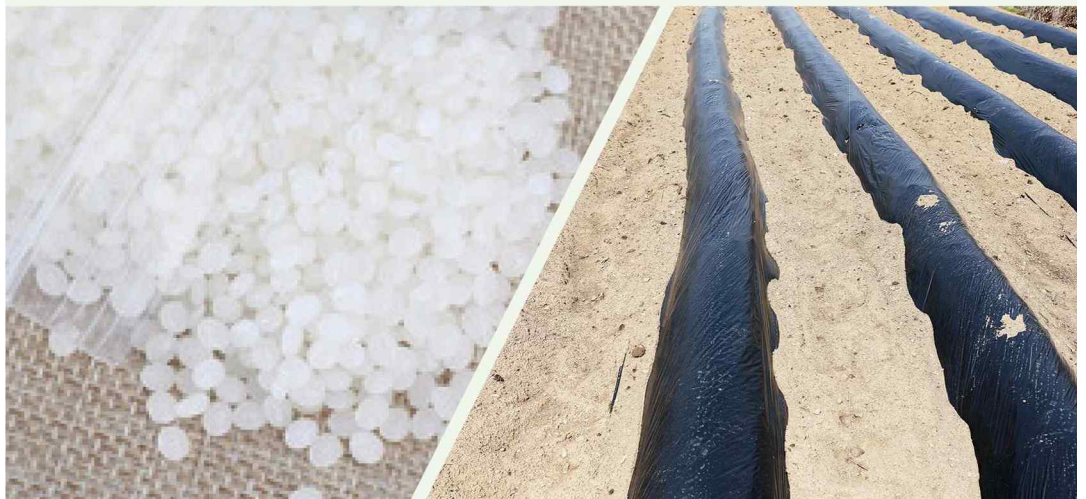
EL724

제정 2003년 1월 6일

개정 2023년 12월 29일



EL724 : 2023 생분해성수지제품





제 정 자: 환경부장관

제 정: 2003년 1월 6일

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최 종 개 정: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환경 관련 기준	2
4.1 제품에서의 수지 사용 비율	2
4.2 유해원소 함량	3
4.3 사용금지 원료	3
4.4 생분해도	4
4.5 식물의 생태독성	4
5 품질 관련 기준	4
5.1 성형원료	4
5.2 품질 및 성능	4
6 소비자 정보	5
7 검증방법	5
8 시험방법	5
9 인증사유	6
부속서 A(규정)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방법	7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2002/8/2022-275]**은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2023

생분해성수지제품

Biodegradable Resin Produc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복수 재질의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성형 제조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원료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업용 제품과 별도의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

비고 '2022년 1월 3일 기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거나 '2022년 1월3일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심사 진행 중으로 이 고시의 시행일 당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용 후 오염이 발생하거나 분리수거 효율이 떨어져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인증제품의 인증기간 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ISO 2602, 시험결과의 통계적 해석 — 평균의 추정 — 신뢰구간

KS I ISO 17294, 수질—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의 적용

KS M 0016, 원자 흡수 분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KS M ISO 14855-1,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 —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 제1부: 일반적 방법

KS M ISO 17556, 플라스틱 —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에 의한 토양에서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EN 17033, Plastics — Biodegradable mulch films for use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

OECD 208, Terrestrial Plant Test: Seedling Emergence and Seedling Growth Test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M ISO 14855-1 또는 KS M ISO 17556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통상의 합성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지만, 사용 후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합성수지

비고 이 기준에서는 생분해성 합성수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의 합성수지와 생분해성수지를 혼합하거나 재생섬유 및 천연 유기재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3.2 천연 유기재료

천연에 존재하는 전분, 셀룰로오스, 종이, 펄프, 리그닌 등의 유기재료

3.3 호기성 최종 생분해(ultimate aerobic biodegradation)

호기성 조건에서 고분자물질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류 및 새로운 생물량(biomass)으로 전환되는 것

3.4 생분해도

호기성 최종 생분해에 의하여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누적량을 이용하여 같은 규격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 생분해도

3.5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의도적으로 야외 등에 설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서 회수가 어려운 제품

비고 이 기준에서 농업용 멀칭필름, 식생시트(법면녹화용 제외)와 앵커 핀, 분골함 등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의 예이다.

3.6 어업용 제품

강이나 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보기 대표적인 어업용 제품은 그물이나 어망, 낚싯줄 등이 해당된다.

4 환경 관련 기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생분해성수지 사용률	▪ 생태계 독성 감소
	▪ 유해원소 함량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사용금지 원료	▪ 유해물질 사용 감소
유통·사용·소비	▪ 식물의 생태독성	▪ 생태계 독성 감소
폐기	▪ 생분해도	▪ 생태계 독성 감소
재활용	-	-

4.1 제품에서의 수지 사용 비율

a) 제품을 구성하는 수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로서 제품 전체 질량분율의 70 % 이상을 차지하고, 수지 이외의 구성 재료는 일반인이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으로부터

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수지 이외의 구성 재료는 물리적·기계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손잡이, 구조재 등)을 말한다.

b) 성형원료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는 생분해성수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유해원소 함량

성형원료 및 제품에는 원료로서 납(Pb) 화합물이나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성형원료 및 제품에 함유된 유해원소는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비소 (As)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크로뮴 (Cr)	구리 (Cu)	니켈 (Ni)	아연 (Zn)
기준 (mg/kg)	3.5 이하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50 이하	37.5 이하	25 이하	150 이하

4.3 사용금지 원료

식품 또는 식품 원료와 접촉되는 용기·기구·포장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수지의 원료로서 다음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품으로부터 직접 흡입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과 이산화티타늄(TiO₂)은 제외한다.

a)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표 3의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비고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Part 3(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표 3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코드	세부 내용
toxic substances:	
H310	fatal in contact with skin
H330	fatal if inhaled(gas, vapour, dust/mist)
allergies substances:	
H334	may cause allergy or asthma symptoms or breathing difficulties if inhaled
carcinogenic, mutagenic and reprotoxic substances:	
H340	may cause genetic defects
H350	may cause cancer
H350i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H351	suspected of causing cancer
H360F	may damage fertility
H360D	may damage the unborn child
H361f	suspected of damaging fertility
H361d	suspected of damaging the unborn child
H362	may cause harm to breast-fed children

b)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

c)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벌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 d)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에 따라 H317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4.4 생분해도

성형원료 및 제품의 생분해도는 **a)** 또는 **b)**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첨가제로서 개별 함량이 1 % 미만이며 총 함량이 5 % 미만인 유기성분에 대해서는 생분해도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무기성 첨가제에 대해서도 생분해도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성형원료 및 제품의 생분해는 2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 b)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도 값의 60 %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4.5 식물의 생태독성

4.4 a)를 시험하는 성형원료 또는 제품은 OECD 208에서 언급하는 1종의 쌍떡잎 식물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a) 씨앗의 발아율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 b) 식물의 생장은 씨앗 50 % 발아 후 14 ~ 21일 이내에 대조군 대비 90 % 이상 성장하여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성형원료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성형원료 품질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할 때는 구매자의 요구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2 품질 및 성능

5.2.1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5.2.2 5.2.1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 a)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b)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 c)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5.2.3 5.2.1 또는 5.2.2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

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폐기 시 주의사항 및 정보 제공방법

사용 후 폐기 시 재활용 대상 합성수지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구조 또는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는 1차 포장재에 인쇄하여야 한다.

6.3 제품 보관 및 사용 방법

사용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이며, c)에 기재한 사항을 준수하면 생분해 된다’는 내용
- b) 적정하게 사용했을 때 제품으로 의도한 기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 c) 제품의 올바른 사용 장소 및 방법(조경 녹화용 자재는 공법 포함). 유통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발생할 때는 해당 근거와 조건을 기재할 것
- d) 농업용 멀칭필름의 경우, 작물의 재배기간에 따른 적합한 두께의 정보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제출 서류 확인
	4.2	제출 서류 확인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3	제출 서류 확인
	4.4 a)	8.3 a)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4.4 b)	8.3 b)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4.5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품질 관련 기준	5.1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5.2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비고 성형 제품에 대하여는 부속서 A 에서 정한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방법’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원료 또는 동등 이상의 생분해도 인증을 받은 성형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인증심의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4.4 및 4.5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증심의위원회 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른 생분해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댄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뎠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뎠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유해원소 함량

물질별 검출한계를 고려하여 KS M 0016, KS M 0032, KS I ISO 17294를 준용하여 시험한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결과와 정량한계를 기록한다.

8.3 생분해도

비고 생분해도 시험시료는 성형원료의 경우 펠릿(pellet) 형태로부터, 제품인 경우 예상되는 최종 형태로부터 취하여야 하며, 이를 동결 분쇄한 다음 KS A 5101-1에 따른 호칭 눈 크기 250 μm 인 시험용 체를 통과한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 KS M ISO 17556에 따라 시험한다.
- b) KS M ISO 14855-1에 따라 시험한다.

8.4 식물 생태독성

EN 17033의 종자발아법 및 식물 생장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a	에너지 절약 ^b	지구 환경오염 감소 ^c	지역 환경오염 감소 ^d	유해물질 감소 ^e	생활 환경오염 감소 ^f	소음·진동 감소 ^g
해당 여부				●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부속서 A (규정)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방법

A.1 개요

이 규정에서는 성형 제품이 생분해성수지제 성형원료와 동일한 생분해성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이내의 시험 분석 결과가 미리 등록된 성형원료의 시험 분석 결과와 동등함을 입증함으로써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원료와 마찬가지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4가지 시험방법이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원료와 동일함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A.2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A.2.1 TGA(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한 시험

이 방법은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터(aliphatic polyester, AP)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 mg ~ 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여 고르게 packing한 후 질소분위기 하에서 105 °C까지 승온한 다음 5분간 유지하여 시료 내의 수분을 제거한다.
- 건조된 시료를 질소 분위기 하에서 10 °C/min의 승온 속도로 600 °C까지 승온하여 열중량 곡선을 얻는다.

보기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터 수지는 전분의 함량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취한 후 반올림하여 상수자리로 계산한다.

$$\text{전분 함량 [무게분율(\%)]} = \frac{\text{전분 분해량}}{\text{전체량} - \text{잔사량}} \times 100$$

이때, 전분 분해량은 열중량 곡선을 미분하여 얻은 미분곡선(derivative curve)의 전분의 초기분해 시작점(W_i)과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분해가 시작되는 바탕선의 중간지점(W_f)으로부터 계산한다.

A.2.2 용출법(Extraction Method)에 따른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함량 분석

이 방법은 지방족 폴리에스터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0.5 cm × 0.5 cm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로 자른 후 열풍식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 건조된 시료를 각 5 g씩 채취하여 정확히 질량을 달아 셀룰로오스 필터(추출용 thimble)에 넣고, 미리 질량을 잰 250 mL 넓적바닥 플라스크(W₁)에 클로로포름 200 mL를 넣은 다음 속슬렛 추출기 및 냉각기를 설치한다.
- 수욕조의 온도를 80 °C의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24시간 동안 추출을 실시한다.

- d) 24시간 추출한 후 넓적바닥 플라스크를 떼어내어 내부의 용액 중의 클로로포름을 회전 농축증발기를 사용하여 증발시킨다.
- e) 다시 증발된 플라스크 내용물을 열풍 건조기에서 105 °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 f) 건조된 각 플라스크 질량(W_2)을 잰 뒤 내부의 내용물만의 질량($W_2 - W_1$)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 g) 지방족 폴리에스터(AP)의 함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text{AP 함량[질량분율(\%)]} = \frac{W_2(\text{g}) - W_1(\text{g})}{\text{원 시료의 질량(g)}} \times 100$$

여기서, W_1 : 미리 잰 250 mL 넓적바닥 플라스크의 질량
 W_2 : 건조된 각 플라스크 질량

A.2.3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한 시험

- a)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3 cm × 3 cm(가로×세로)의 크기로 채취하고, 이 가운데 무작위 채취한 3개의 시편을 열풍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랭시킨다.

비고 제품에 안료 등과 같이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필름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한다.

1.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필름 형태가 아닌 시료
 시료를 2차 전이점 이상의 온도에서 크로믹 도금한 금속판 위에서 압축시켜 필름 형태로 만들거나 용매로 용해하여 금속판이나 NaCl 판, KCl 판 위에 칠하여 용매를 날려 보낸 다음 이를 시편으로 한다.
2.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
 시료를 용매로 용해하고 원심분리하여 고형분을 제거한다. 여기에 다시 적당한 용제를 가하여 첨가제를 용해하고 침전제를 가하여 가능한 한 순수한 폴리머만을 분리한 다음, 상기 1에 규정된 방법으로 필름을 만들어 시편으로 사용한다.

- b) FTIR 분광계는 질소가스 분위기로 안정화시킨 다음 파동수 4000 cm^{-1} ~ 400 cm^{-1} 에서 바탕선을 정확히 맞춘다.
- c) 건조된 각 시편에 대한 FTIR 흡수스펙트럼을 구한 다음, 수지 종류별 표준 흡수스펙트럼 등과 비교한다.

A.2.4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을 이용한 시험

- a)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 mg ~ 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여 채취한 시료의 합이 약 40 mg이 되도록 하고, 이를 고르게 packing한 후 열풍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랭시킨다.
- b) 건조된 시료를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CDCl_3) 용매에 녹인 다음, 이 용액으로부터 주파수 250 MHz 이상인 수소 NMR을 사용하여 NMR 스펙트럼을 얻는다. 시료가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잘 녹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중수소화된 용매 중에서 적당한 용매를 사용하여도 좋다.

- c)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시료의 화학구조식을 추정하고, 이 시료가 단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혼합물인지를 판별한다. 혼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비분해성 수지가 나타내는 특성 신호가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신호를 기준으로 비분해성 수지의 비율을 추정한다.

A.3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A.3.1 성형 제품 제작용 생분해성수지 원료의 등록

EL724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원료 제조자는 성형 제품 제작자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EL724에 따른 4절 (환경 관련 기준)에서 정한 4.3, 4.5기준에 적합함을 **부속서 A**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부속서 A, A.2.1~A.2.4**에 따른 재질 관련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생분해성 성형 제품 제작용 원료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A.3.2 성형 제품 제작자의 원료 사용

성형 제품 제작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원료(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A.3.3 동일 재질 여부 확인

- a) 제작된 성형 제품에 대하여 **부속서 A, A.2.1~A.2.4**에 따른 재질 관련 시험 가운데 2개 이상의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 a)의 재질 관련시험 항목은 인증수탁기관의 장이 선정하며, 이들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는 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원료의 시험 결과 자료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가. 한국산업표준
 -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다. 국제표준
 -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